



대구대학교 · 경상북도 안동시

관·학 공동[위탁]교육협약서



대구대학교(이하 “을” 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안동시(이하 “갑” 이라 한다)는 “갑” 이 의뢰한 학습자의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위탁)교육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 ① 본 협약은 “갑” 과 “을”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갑” 이 의뢰한 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위탁교육이란 “갑” 에서 의뢰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구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업을 의미한다.

제2조(위탁기간)

- ① 위탁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② 이 협약서는 협약만기일 1개월 전까지 협의에 의거,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3조(학습과목)

교육과목 편성은 평생교육사 2급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되 “갑” 은 “을” 이 개설한 학습과목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위탁한다.

제4조(교육비)

한 과목(3학점)당 기준 수업료 210,000원 중 “갑” 이 150,000원을 부담하고 “을” 은 60,000원을 감면한다.

제5조(교육비 납부방법)

“갑”은 교육비를 납부함에 있어 개강 월에 교육비 전액을 “을”에게 납부한다.

제6조(학사관리)

“을”이 개설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에 대한 학사관리는 “을”이 하며 학생모집은 “갑”이 한다.

제7조(세부사항)

기타 교육운영상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2. 21.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 장 홍 덕 료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representative of Daegu University.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안동시

시 장 권 영 세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representative of Andong City.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